

최신 문서: 2005 년 12월 9일

미국 환경 보호부

환경 보호부는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을 줄이기는 규정을 제정합니다

Contact: John Millett, 202-564-4355 / millett.john@epa.gov

최근에 발표된 인체 위험성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환경부는 드라이 클리닝업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퍼클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배기 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미국 전역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위험성은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는 그 보다 좀더 낮게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펙 드라이 클리닝의 위험성 때문에, 그리 많지 않는 아파트 건물 내에 위치한 세탁업소들의 좀더 세밀한 검사가 필요 합니다. 좀더 빨리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단체로 부터 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Air and Radiation의 acting assistant administrator 인 빌 위루훔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000개가 넘는 미국에 있는 여러 크기와 각기 다른 종류의 세탁업소들이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펙, 솔벤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펙은 미국 환경부가 규정한 188개의 대기 오염 유독 가스들중 하나이고, 또한 인체에 해로운 대기 오염 가스로 알려져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가스들은 대부분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또한 암을 유발 하거나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 미국 환경 보호국이 유독성이 있는 가스들에 대한 규정을 정한 이후, 매년 세탁업체들은 펙 배기 가스 사용량을 15,000톤 까지 줄는 대신 다른 종류의 솔벤트 사용량을 늘려 가고 있고, 오래된 세탁장비들을 새로운 장비로 바꾸며, 또한 주 정부와 산업체에서는 펙사용을 줄이면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아파트 건물 내에 위치한 모든 드라이 클리닝업자들에 대한 환경 보호국의 1993년 대기오염에 규정은 좀더 적은양의 펙을 사용 하도록 수정 될것 입니다.

미국 환경부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유독가스를 사용을 줄여, 이 유독 가스로 부터 우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 보호부는 두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환경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암 발생률을 대략 백만분중에 100까지 줄이려고 합니다. 그 말뜻은 세탁업소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70까지 사는 동안 대기 오염을 통해 암에 걸릴 확률을 백만분에 백(100/1,000,000)까지 줄인하는 얘기 입니다. 두번째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때문에 암에 걸릴 수있는 가능성을 백만분에 일(1/1,000,000) 보다 적게 하기 위해 노력 할것 입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큰 규모의 기업과 상업 형태의 드라이 클리닝업자들:** 미국에는 15개의 대규모 형태의 드라이 클리닝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세탁 업체들은 1993년에 환경 보호부에서 제정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 수정안은 이들 대규모 업체들에게 요구 되는 규격 장비 사용과 매달 정기적으로 가스가 세는걸 방지하고 수리하도록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90퍼센트까지 위험성을 줄일 것입니다.
- **소규모 자영 세탁업소들:** 소규모 자영 세탁업소들이란, 상가에나 따로 독립된 건물에 위치한 세탁업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탁업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받을 수있는 위험성을 백만분에 10 보다 적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략 27천개의 자영업 세탁업소의 장비들을 규정 맞는 장비 사용과 가스가 세는걸 방지하고 수리하도록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위험 발생률을 20퍼센트 정도로 감소 시킬것 입니다. 또한, 모든 자영업 세탁업소들이 옷을 드라이 클리닝하는 동안 한쪽기계에 다른 쪽 기계로 옮겨야 하는 방식의 기계들을 점차적으로 소각해 갈것 입니다.

- 아파트 건물 내에 위치한 자영 세탁업소들:** 대략 천삼백개의 펍을 사용하는 작은 자영 세탁업소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다른 자영업 세탁업소들처럼, 이들 “거주자에 근접한” 업체들은 현재 1993년에 제정된 일반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아파트 거주자들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암 발생률 또한 다른 세탁소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보다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위해 조사된 최근자료에 의하면, 대략 이러한 건물내에 사는 거주민이 암에 걸릴 최대 확률은 백만 분에 백이 넘는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부는 그런 근접 자영업 세탁업소들에 관해 두개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성에 관한 조항, 이들 근접 자영업 세탁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펍을 사용하는 기계를 설치 할 수 없고, 또, 대략 15년 안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펍 장비들을 소각하여 위험성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인 조항에 관해, 환경 보호부는 뉴욕주 환경부의 엄격한 세탁업소 규정을 바탕으로 새 요구 사항이 만들어 질것 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대기중의 펍 솔벤트를 회복할수 있고 드라이 크리닝 기계로 부터 펍 배기 가스를 가둘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항은, 환경 보호부에서 위험성을보다 빨리 감소를 돕기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펍을 사용하지않는 드라이 크리닝업주나 드라이 크리닝을 다른곳에 보내서 드라이 크리닝하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연방기록에 게재된 후 60일동안 공공, 개인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의견을 보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epa.gov/air/drycleaningrule>